

드론 산업 발굴·육성 및 연구개발 상호협력을 위한

협약서

(재)원주미래산업진흥원, 제36보병사단, 국립강릉원주대학교, 산림항공본부, KT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드론 산업 발굴 및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상호협력 및 지원하여 각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각 기관은 제1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한다.

1. 대드론 방호체계, 디지털 기술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동 연구 및 실증 협력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2. 각 기관별로 보유 중인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3. 각 기관의 기술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4. 각 기관은 교류회를 확대하여 드론 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.
5. 기타 홍보활동 및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노력한다.

제3조(비밀유지)

-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 중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공개가 필요한 경우는 각 기관이 서면으로 사전 합의하여 공개한다.
- ② 각 기관은 보유하게 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각 기관은 「군사기밀보호법」, 「국방 보안업무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④ 본 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존속한다.

제4조(분쟁해결)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 및 기간)

- ①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최종 서명한 날(이하 "협약 체결일"이라 한다)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,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초 3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해지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협약 만료일부터 1년씩 연장한다.
- ② 각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수정·보완할 수 있다.
- ③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본 협약의 효력은 잔존 당사자들에 의하여 유지된다.

제6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추진한다.

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6월 17일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
총장

박덕영



(재)원주미래

산업진흥원장

조영희



제36보병사단장

하헌철



산림항공본부

산림항공본부

본부장

김만주



KT강원법인

고객담당

정순환